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BI 입주기업 모집공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창업보육센터(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8월 7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장

□ 모집개요

- 소재지 :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
- 모집 기업수 : ○개 업체

□ 입주자격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충북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입주자격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 지원사업 부적격자
 -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 입주기업 지원

- 인터넷전용선, 창업보육실, 공동회의실 등의 인프라 제공
- 컨설팅,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 지원
- 노무, 금융, 수출, 마케팅 등 전문가 수시상담 제공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멘토링

□ 입주공간 및 입주부담금

- 입주공간 : 8평 내외
- 입주가능일자 : 2025년 9월 중(변동가능)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1년마다 연장심사)
- 입주부담금

구 분	보증금	월관리비	비고
금 액	1,500천원	14천원/3.3㎡(변동가능)	VAT 별도 전기요금 별도

□ 선정기준

- 창업자의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 사업계획, 수행능력 평가
- 여성창업경진대회수상자, 창업프로그램 이수자, 경력단절여성 등 우대

□ 선정 절차

- 1차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통과여부는 개별 통지
- 2차 : 발표심사 (대표자 참석 필수)
 - 서류전형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프리젠테이션 (5분 내외) 및 질의 · 응답
- 입주심사 시기 :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 8. 7.(목) ~ 2025. 8. 28(목)까지
 - * 모집기간 내 접수 미달 시 수시로 추가 모집 진행
- 제출서류 : 첨부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참고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이메일 발송(mhpark@wbiz.or.kr) 신청
-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박미현 팀장
(043-236-6561, mhpark@wbiz.or.kr)
- 주소 :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 유의사항

- 보육실을 입주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업화지원, 기간연장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1. 충북센터 주요 시설



건물 전경



화상회의실



창업보육실(가구 집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키즈룸



스마트스튜디오



네트워킹라운지

[참고 2]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 범위에서 제외함

(별표1)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산업표준분류	업종	비고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관련 전업종	
부동산업	68~69	부동산 임대, 중개, 장비 및 기계 임대, 음반 및 비디오 등 임대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법인 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게임업 및 베팅업	9124	기타 게임업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이용 및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미용관련 서비스업 세탁 및 장례, 예식관련 서비스업 및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 등	산업용 세탁업 제외

< 산업표준 분류 >

- 55 숙박업(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일반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64 금융업(은행 및 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68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69 임대업;부동산 제외(운송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참고 3]

제출 서류 목록표

구분	서류명	발급처	개수
입주신청서	신청서, 대표자이력서,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소정양식	1부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예비창업자 해당) 총 사업자등록내역증명원(기창업자 해당)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부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	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부
상시근로자 확인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4대사회보험 토털 (www.4insure.or.kr)	택1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매출액 확인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날인 자료만 인정	택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도 확인	국세 납부증명 - 법인사업자 : 회사, 대표자 -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 대표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부
	지방세 납부증명 - 법인사업자 : 회사, 대표자 -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 대표자	관할 구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www.gov24.kr)	1부
기타증빙	지식재산권 보유 증명	각 발급기관	각 1부

[참고 4] 창업인정 기준 자가진단표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BINET)>

창업의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창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 내릴수 있다.
- 범위 내용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 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가 (개인)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 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3.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 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4.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5.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참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조(창업의 범위)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④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